안전투자 혁신사업 사업주가 알아야할 사항(2)

□ 「**안전투자 혁신사업(위험공정 개선, 리프트 교체)**」 진행 중 **취소 사유 발생 시** 공단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절 차	주 의 사 항
재정평가	▸ **할부 또는 리스**를 선택하였으나, **평가 결과 부적합**한 경우 **지원 불가**
현장평가	▸ 현행공정 확인 및 **사업계획 및 공정개선 점검 결과 부적합**한 경우 **지원 불가**
협약체결	▸ **기한 내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⇨ 사업 참여 취소**
결정통보	▸ **결정통보일 이전 계약**된 경우, 사전투자에 해당되어 **보조지원 진행 불가**

< 자주 묻는 질문(FAQ) >

1 사전에 투자 설비의 보조금 소급 적용여부

○ **공단의 보조지원 결정통보일 이전**에 **공급계약을 체결**한 경우 **보조지원 불가**

2 재정평가 기관과 할부·리스의 선택

○ 금융지원 방식으로 **할부 또는 리스를 선택한 경우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(6개사) 중 선택하여 재정평가 실시**

※ 기한 내에 한하여 재정평가 부적합한 경우, 타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재정평가 가능

○ **재정평가 결과 적합 통보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부 또는 리스 진행**

3 현장평가 주요 확인 사항

○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행 공정의 일치 여부 및 개선 내용의 적정성 확인

* 뿌리공정(주조, 소성가공, 표면처리), 리프트를 보유하지 않거나 점검결과 부적합 시 보조지원 불가

4 결정통보 후 필수 이행 사항

○ **공정개선 시 산업안전보건법* 및 관계법령****에 의한 **의무사항 확인 및 이행**

*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,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신고 등

** 화학물질관리법(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,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 등) 등